

3. 수립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10,523원[8,590원(최저임금) × 122.5%] / 월급2,199,307원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 ①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 ② 서울특별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 ③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27호

공평구역 및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533호(1979.12.28.)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28호(2005.10.27.)로 공평구역(제15,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8호(2013.11.21.)로 인사동 일대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공평구역 및 공평구역 제15·16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나. 정비구역 변경지정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평구역	종로구 인사동 223번지 일대	94,957.4	증)70.7	95,028.1	•인사동 34-2번지 일대 - 일반정비형 : 61,885.1㎡ ⇨ 60,054.2㎡ •인사동 161번지 일대 - 소단위정비형(수복형) : 33,072.3㎡ ⇨ 34,182.6㎡ (15·16지구에서 부담하는 기반시설 일부 1,271㎡ 포함) •종로2가 12번지 외 - 보전정비형 : 791.3㎡

※ 공평1·2·4지구의 측량면적 반영 등에 따른 정비계획 기 결정사항 반영으로 구역경계의 변경은 없음(종로구고시 제2017-130호)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구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	사업계획 내역(㎡)		최초결정일	비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비율)		
합계				95,028.1	72,815.3	22,212.8	-	
기정	공평구역	1,2,4지구	공평동 5-1번지 일대	10,412.4	7,850.6	2,561.8	건고시 제285호 ('78.09.26.)	시행중
변경	공평구역	1,2,4지구	공평동 5-1번지 일대	10,462.4	7,900.1	2,562.3	-	완료
기정	공평구역	3지구	공평동 1번지	5,498.1	4,225.0	1,273.1	건고시 제285호 ('78.09.26.)	완료
기정	공평구역	5지구	인사동 194-27번지	4,525.1	3,578.0	947.1	건고시 제285호 ('78.09.26.)	완료
기정	공평구역	6지구	인사동 194-4번지, 관훈동 200번지	3,690.0	2,918.6	771.4	건고시 제285호 ('78.09.26.)	완료
기정	공평구역	12지구	낙원동 272번지 일대	4,214.1	3,284.5	929.6	건고시 제285호 ('78.09.26.)	완료
기정	공평구역	14지구	인사동 43번지, 낙원동 304번지	3,236.7	2,087.5	1,149.2	건고시 제285호 ('78.09.26.)	완료
기정	공평구역	17지구	종로2가 9번지 일대	4,614.6	4,614.6	- (20.2%)	건고시 제285호 ('78.09.26.)	준치
기정	공평구역	18지구	인사동 262번지 일대	5,192.5	5,192.5	- (20.2%)	건고시 제285호 ('78.09.26.)	시행 예정
기정	공평구역	19지구	공평동 70번지 일대	6,821.7	5,007.9	1,813.8	건고시 제285호 ('78.09.26.)	완료
기정	공평구역	A1	인사동 137-2대	142.5	142.5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2	인사동 143대	178.5	178.5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3	인사동 146대	66.1	66.1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4	인사동 147대	191.7	191.7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5	인사동 148대	72.7	72.7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6	인사동 149대 인사동 149-2대	92.6	92.6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7	인사동 152대	191.7	191.7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8	인사동 156대	132.2	132.2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	사업계획 내역(㎡)		최초결정일	비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비율)		
기정	공평구역	A9	인사동 157대 인사동 158대 인사동 159대 인사동 160대	218.2	218.2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10	인사동 165-1대 인사동 165-6대	163.0	163.0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11	인사동 162대 인사동 163대 인사동 163-1대 인사동 164대 인사동 164-1대 인사동 165-2대 인사동 165-3대 인사동 165-4대 인사동 165-5대 인사동 166-1대 인사동 166-3대 인사동 166-4대 인사동 167대 인사동 167-1대 인사동 167-2대 인사동 193-8도 인사동 193-9대 인사동 193-13대 인사동 193-14대	590.2	590.2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12	인사동 168대	150.5	150.5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13	인사동 170대 인사동 170-3대 인사동 171대 인사동 172대 인사동 173-9대	465.1	465.1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14	인사동 179-2대	105.5	105.5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15	인사동 15대	418.6	418.6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16	인사동 23-2대 인사동 23-4대 인사동 24-2대 인사동 27-1대 인사동 27-3대	93.9	93.9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17	인사동 27-4대 인사동 28-1대 인사동 28-3대 인사동 28-7대 인사동 28-8대 인사동 30-1대	67.5	67.5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18	인사동 31대 인사동 32-2대 인사동 32-3대 인사동 36-1대 인사동 36-3대 인사동 36-4대	429.1	429.1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19	인사동 37대	178.5	178.5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20	인사동 39대	472.7	472.7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21	인사동 34-26대 인사동 35대	326.7	326.7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A22	인사동 34-6대	41.3	41.3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B1	관훈동 198-55대	300.4	300.4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B2	인사동 191-2대 인사동 191-3대	165.3	165.3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	사업계획 내역(㎡)		최초결정일	비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비율)		
기정	공평구역	B3	인사동 190-2대	139.8	139.8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인사동 190-3대					
기정	공평구역	B4	인사동 188-4대	172.3	172.3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인사동 188-8대					
기정	공평구역	B5	인사동 173대	488.7	488.7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인사동 173-3대					
			인사동 173-7대					
			인사동 174-2대					
			인사동 188-2대					
			인사동 188-10대					
			인사동 188-11대					
기정	공평구역	B6	인사동 174-3대	133.9	133.9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인사동 177-2대					
			인사동 178-2대					
기정	공평구역	B7	인사동 16-2대	79.3	79.3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B8	낙원동 283-13대	89.3	89.3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B9	낙원동 283-6대	209.8	209.8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낙원동 283-38대					
기정	공평구역	B10	낙원동 283-35대	65.7	65.7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1	인사동 171-1대	135.8	135.8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인사동 171-2대					
			인사동 172-1대					
			인사동 172-2대					
기정	공평구역	C2	인사동 193-1대	291.9	291.9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인사동 193-12대					
기정	공평구역	C3	인사동 193-5대	218.2	218.2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4	인사동 193대	562.3	562.3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인사동 193-13대					
기정	공평구역	C5	인사동 154-8대	128.9	128.9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6	인사동 154-6대	254.5	254.5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인사동 154-7대					
기정	공평구역	C7	인사동 161대	290.9	290.9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8	인사동 154-11대	221.5	221.5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9	인사동 154-10대	125.6	125.6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10	인사동 154-4대	135.5	135.5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11	인사동 154-3대	132.2	132.2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12	인사동 155대	72.7	72.7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13	인사동 194-28대	167.4	167.4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14	인사동 153-4대	235.3	235.3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인사동 153-5대					
			인사동 153-10대					
			인사동 153-6대					
			인사동 153-11대					
			인사동 219대					
기정	공평구역	C15	인사동 219-1대	355.0	355.0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인사동 153-3대					
기정	공평구역	C16	인사동 153-8대	288.6	288.6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인사동 153-2대					
기정	공평구역	C17	인사동 153-7대	162.3	162.3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인사동 153-1대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	사업계획 내역(㎡)		최초결정일	비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비율)		
기정	공평구역	C18	인사동 141-1대 인사동 141-5대	111.1	111.1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19	인사동 141-2대 인사동 141-6대 인사동 210-7도	410.4	410.4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20	인사동 151대	86.9	86.9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21	인사동 138대 인사동 139대 인사동 140대 인사동 142대	439.7	439.7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22	인사동 138-2대 인사동 138-1대	285.3	285.3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23	인사동 220-1대	142.1	142.1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24	인사동 220-6대	142.1	142.1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25	인사동 220-7대	168.6	168.6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26	인사동 230대 인사동 230-1대 인사동 230-2대 인사동 230-3대 인사동 231대 인사동 231-2대	479.8	479.8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C27	인사동 119-1대	361.4	361.4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D1	인사동 33-1대 인사동 34-2대 인사동 34-3대 인사동 34-4대 인사동 34-5대 인사동 34-25대 인사동 34-26대 인사동 34-27대 인사동 34-28대 인사동 34-15대 인사동 34-16대 인사동 34-17대 인사동 34-18대 인사동 34-19대 인사동 34-20대 인사동 34-21대 인사동 34-22대 인사동 34-23대 인사동 34-24대 인사동 34-29대 인사동 34-30대 인사동 34-31대 인사동 34-32대 인사동 34-33대 인사동 34-34대 낙원동 284-33대 낙원동 284-42도 낙원동 284-35대	622.4	622.4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D2	낙원동 285-1대	160.1	160.1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D3	낙원동 285-1대	417.5	417.5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E1	인사동 207대	97.0	97.0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E2	인사동 208대 인사동 208-1대	65.4	65.4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E3	인사동 209대	92.6	92.6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	사업계획 내역(㎡)		최초결정일	비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비율)		
기정	공평구역	F1	인사동 246층 인사동 246-2층 인사동 247대 인사동 248대 인사동 271공	1,160.3	1,051.3	109.0 (7.4%이상)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G1	인사동 137층	2,881.0	2,881.0	-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소단위 공동개발 지구	인사동 18대 인사동 20-1도 인사동 23-1대 인사동 24-1대 인사동 25-1대 인사동 25-3도 인사동 26대 낙원동 283-2대 낙원동 283-9대 낙원동 283-10대 낙원동 283-11대 낙원동 283-14대 낙원동 283-15대 낙원동 283-23대 낙원동 283-24대 낙원동 283-25대 낙원동 283-26대 낙원동 283-27대 낙원동 283-28대 낙원동 283-29대 낙원동 283-31대 낙원동 283-32대 낙원동 283-39도	1,765.0	1,628.4	136.6 (5.5%이상)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수복형 공동개발 지구	인사동 128-1도 인사동 128-2대 인사동 120-4도 인사동 129-1대 인사동 129-2대 인사동 130-1대 인사동 130-2대 인사동 130-3도 인사동 130-54대 인사동 130-55대 인사동 130-56대 인사동 130-57대 인사동 131대 인사동 132대 인사동 133대 인사동 134대	3,100.6	2,772.9	327.7 (3.4%이상)	건고시 제285호 ('78.09.26.)	수복형
변경			인사동 134-1도 인사동 135-1대 인사동 135-2대 인사동 135-3대 인사동 135-4대 인사동 135-5대 인사동 135-6대 인사동 135-17대 인사동 135-18대 인사동 135-19대 인사동 135-20대 인사동 135-21대 인사동 136대 인사동 137-3대 인사동 137-4대	2,772.9	2,772.9	- (3.4%이상)	-	수복형
기정	공평구역	15,16지구	인사동 87번지 일대	13,616.7	9,783.6	3,833.1	건고시 제285호 ('78.09.26.)	철거형
변경	공평구역	15-16지구	인사동 87번지 일대	12,854.1	9,277.1	3,577.0 (20.2%이상)	-	일반 정비형
변경	공평구역	H1	종로2가 11, 11-4, 11-5	59.2	59.2	-	-	소단위 관리형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	사업계획 내역(㎡)		최초결정일	비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비율)		
변경	공평구역	H2	종로2가 14	167.9	167.9	-	-	소단위 관리형
변경	공평구역	H3	종로2가 17	133.3	133.3	-	-	소단위 관리형
변경	공평구역	H4	종로2가 20	150.5	150.5	-	-	소단위 관리형
변경	공평구역	H5	종로2가 21, 21-1, 22-3	180.8	180.8	-	-	소단위 관리형
변경	공평구역	H6	종로2가 22-2	92.9	92.9	-	-	소단위 관리형
변경	공평구역	H7	종로2가 22	92.9	92.9	-	-	소단위 관리형
변경	공평구역	H8	종로2가 23, 23-1	105.2	105.2	-	-	소단위 관리형
변경	공평구역	H9	종로2가 24, 24-1, 25	127.6	127.6	-	-	소단위 관리형
변경	공평구역	I1	종로2가 12, 12-1, 12-2, 13, 13-1, 13-2	423.1	423.1	-	-	보전 정비형
변경	공평구역	I2	종로2가 15, 15-1, 16, 16-1	156.6	156.6	-	-	보전 정비형
변경	공평구역	I3	종로2가 19	211.6	211.6	-	-	보전 정비형

※ I1~I3 : 신축 및 리모델링 시, 획지 내 근현대건축자산 보전계획수립(역사도심 관리지침 반영)

□ 변경사유서

구분	지구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	1,2,4지구	1,2,4지구	공평동 5-1 일대	•사업시행지구 면적 변경 - 면적:10,412.4㎡→10,462.4㎡	• 2018년 사업 완료된 공평 1,2,4지구의 최종 정비계획 변경고시 면적 반영 (종로구고시 제2017-130호, 2017.09.29.)
변경	수북형 공동개발 지구	수북형 공동개발 지구	인사동 130-1 일대	•사업시행지구 면적 변경 - 면적:3,100.6㎡→2,772.9㎡	• 대상지 남측 1516지구 사업시행에 따라 도로 개설을 위해 수북형공동개발지구의 공공시설 부담부분인 일부 필지를 1516지구내 포함함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면적 감소
변경		1516지구	인사동 87번지 일대	•사업시행지구 분할 및 면적 변경 - 면적:13,616.7㎡→12,854.1㎡	• 기존 철거형으로 수립된 공평 1516지구 중 종로·피맛길변 소규모 필지를 제외하고, 대규모 부정형필지가 집중 분포된 이면부를 일반정비형으로 계획, 수립
변경	1516지구	H1~H9	종로변	•정비사업 수법변경 - 철거형 ⇨ 소단위관리형	• 기존 도시조직(골목길, 필지체계) 유지를 위해 공평 1516지구에서 분할하여 소단위관리형으로 정비수법 변경
변경		I1~I3	종로변	•정비사업 수법변경 - 철거형 ⇨ 보전정비형	• 구역내 근현대 건축물 보전을 전제로 한 정비를 통해 역사·문화적 장소성 및 정체성 유지·보전하기 위해 공평 1516지구에서 분할하여 보전정비형으로 정비수법 변경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 지역	합 계	13,616.7	증)1,139.0	14,755.7	100.0	
	일반상업지역	13,616.7	증)1,139.0	14,755.7	100.0	사업시행지구 경계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616.7	증)1,139.0	14,755.7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833.1	감)256.1	3,577.0	24.3	일반정비형(15·16지구)에서 기부채납
	도 로		3,768.8	감)1,374.4	2,394.4	16.2	
	공 원		64.3	증)1,035.7	1,100.0	7.5	
	광 장		－	증)82.6	82.6	0.6	
획지	소 계		9,783.6	증)1,395.1	11,178.7	75.7	
	일반정비형	획지①	9,783.6	감)506.5	9,277.1	62.9	
	소단위 관리형	H1	－	증)59.2	59.2	0.4	
		H2	－	증)167.9	167.9	1.1	
		H3	－	증)133.3	133.3	0.9	
		H4	－	증)150.5	150.5	1.0	
		H5	－	증)180.8	180.8	1.2	
		H6	－	증)92.9	92.9	0.6	
		H7	－	증)92.9	92.9	0.6	
		H8	－	증)105.2	105.2	0.7	
		H9	－	증)127.6	127.6	0.9	
	보전정비형	I1	－	증)423.1	423.1	2.9	
		I2	－	증)156.6	156.6	1.1	
		I3	－	증)211.6	211.6	1.4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6	10~12	집산 도로	690	인사동 72	관훈동 74-1	일반 도로	인사동길	총고722호 ('36.12.26.)	
기정	중로	2	210	15	집산 도로	362 (141)	공평동 66	인사동 72	일반 도로	종로타워	건설부고시 제533호 ('79.12.28.)	
변경	중로	2	210	15	집산 도로	221 (-)	공평동 66	인사동 232	일반 도로	종로타워	-	
기정	중로	2	211	15	집산 도로	70 (70)	인사동 231	종로2가 10	일반 도로	YMCA	건설부고시 제533호 ('79.12.28.)	
변경	중로	3	211	12	집산 도로	86 (86)	인사동 231	종로2가 10	일반 도로	YMCA	-	
기정	중로	3	150	12	집산 도로	162	인사동 247	인사동 219-1	일반 도로	태화빌딩	건설부고시 제533호 ('79.12.28.)	
기정	소로	3	-	6~13	국지 도로	110	인사동 218	인사동 198-55	일반 도로	하나로빌딩	건설부고시 제533호 ('79.12.28.)	
기정	소로	3	-	4	특수 도로	69	인사동 231-2	인사동 220-1	보행자 전용 도로	공평공원	서울시고시 제2013-388 호 ('13.11.21.)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9 (129)	인사동 231-2	인사동 72	일반 도로	-	-	

※ ()는 노선번호 미부여에 따라 구분편의를 위해 임시노선번호를 부여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측량 성과에 따름

※ 연장 ()안은 15·16지구 내 포함 현황임

□ 변경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210	중로2-210	• 연장 축소 - 362m→221m (감 141m)	• 사업시행지구내 인접한 17, 18지구의 사업시행 시기가 불분명하여 공평구역을 관통하는 15m폭원 도로의 단기 개설이 어렵고, 대상지 북측으로 인사동 일대 수북형(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이 수립·결정됨에 따라, • 기존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 체계로 도로를 개편, 보행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합리적 도로 체계를 수립하고자
-	소로3-(1)	•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129m	• 기 결정된 도로(중로2-210호선)의 연장을 축소하고, 6m 폭원의 도로(소로 3-(1)호선)를 신설함
중로2-211	중로3-211	• 폭원 감소 - 15m→12m (감 3m)	• 기존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 체계로 개편하여 합리적인 도로 체계를 수립하고자 기 결정된 도로의 폭원을 일부 축소

(2) 공원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평제1공원	역사공원	인사동 210 일대	2,909.9 (64.3)	- (증1,035.7)	2,909.9 (1,100.0)	건설부고시 제533호 ('79.12.28.)	-

※ ()안은 공평 15·16지구의 시행 면적임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평제1공원	• 공평 15·16지구내 편입면적 증가 - 편입면적 : 64.3㎡ → 1,100.0㎡	• 실효성 있는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정비기반시설 우선확보 필요지역' 내 공평제1공원 미확보 토지를 지구내 포함하여 기부채납함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 공원의 조 기 조성을 도모

(3) 광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광장	경관광장	인사동 188-7 일대	728.8 (-)	- (증82.6)	728.8 (82.6)	서고 제2013-388호 ('13.11.21.)	-

※ ()안은 공평 15·16지구의 시행 면적임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장	• 공평 15·16지구 내 일부 편입 - 편입면적 : 82.6㎡	• 실효성 있는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광장 내 미확보된 토지를 포함하여 기부채납함으로써, 경관광장 조기 조성을 도모

4) 정비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1) 정비기반시설 부담 비율

구분		지구명	위치	획지면적 (㎡)	기반시설 부담면적(㎡) (비율)	비고
기정	철거형	15·16지구	인사동 87번지 일대	9,783.6	3,833.1	
변경	일반정비형	15·16지구	인사동 87번지 일대	9,277.1	3,577.0 (20.4%)	20.2%이상
	소단위관리형	H1	종로2가 11, 11-4, 11-5	59.2	-	
	소단위관리형	H2	종로2가 14	167.9	-	
	소단위관리형	H3	종로2가 17	133.3	-	
	소단위관리형	H4	종로2가 20	150.5	-	
	소단위관리형	H5	종로2가 21, 21-1, 22-3	180.8	-	
	소단위관리형	H6	종로2가 22-2	92.9	-	
	소단위관리형	H7	종로2가 22	92.9	-	
	소단위관리형	H8	종로2가 23, 23-1	105.2	-	
	소단위관리형	H9	종로2가 24, 24-1, 25	127.6	-	
	보전정비형	I1	종로2가 12, 12-1, 12-2, 13, 13-1, 13-2	423.1	-	
	보전정비형	I2	종로2가 15, 15-1, 16, 16-1	156.6	-	
	보전정비형	I3	종로2가 19	211.6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정비기반시설 부담 계획

구분	시행면적	대지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계획기반 시설내 기존공공용지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순부담률 (%)	비고
15·16지구	12,854.1	9,277.1	3,577.0	608.1	588.1	2,380.8	20.4%	20.2% 이상
H1	59.2	59.2	-	-	-	-	-	
H2	167.9	167.9	-	-	-	-	-	
H3	133.3	133.3	-	-	-	-	-	
H4	150.5	150.5	-	-	-	-	-	
H5	180.8	180.8	-	-	-	-	-	
H6	92.9	92.9	-	-	-	-	-	
H7	92.9	92.9	-	-	-	-	-	
H8	105.2	105.2	-	-	-	-	-	
H9	127.6	127.6	-	-	-	-	-	
I1	423.1	423.1	-	-	-	-	-	
I2	156.6	156.6	-	-	-	-	-	
I3	211.6	211.6	-	-	-	-	-	

※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시행구역면적 - 계획기반시설내 기존공공용지 - 대지내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

(3) 수복형지구 정비기반시설 부담 비율

구분	지구명	위치	획지면적 (㎡)	공공시설 부담면적(㎡) (비율)	비고
수복형	기정	수복형공동개발지구	종로구 인사동 131 일원	327.7 (3.4%이상)	
	변경	수복형공동개발지구	종로구 인사동 131 일원	- (3.4%이상)	부담비율에 따른 기반시설 제공 또는 비용납부

※ 지구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은 외부 기반시설로 대체하여야 함

※ 공평15·16지구의 정비계획 변경으로 수복형공동개발지구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향후 수복형 공동개발지구의 사업시행 시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담비율 3.4%에 해당하는 타 기반시설 제공 또는 비용으로 환산 하여 납부하여야 함

※ 향후 사업시행 시 공공시설부담면적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 수반됨(경미한 변경 처리)

□ 수복형공동개발지구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변경)

지구명	위치		시설의 종류	공부 면적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수복형 공동개발지구	인사동	129-1	도로	33.1	17.30	감) 17.30	-	
		129-2		19.8	14.30	감) 14.30	-	
		130-1		698.2	215.80	감) 215.80	-	
		130-57		207.6	58.00	감) 58.00	-	
		135-6		129.6	22.31	감) 22.31	-	
합 계				-	327.71 (3.4%이상)	감) 327.71	-	

5) 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1)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계획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H1~H9 I1~I3	330㎡ 이하	- 최대개발규모 적용의 예외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 - 하나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기공동건축) - 공동개발(권장)로 계획된 H1, I1지구

(2) 공동개발(권장)에 관한 계획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H1, I1	- 부정형필지, 소규모필지의 계획적 정비 유도 - 주변지역 대규모 건축물과의 조화되는 계획적 건축물 입지유도	-
H7, H8		

※ 공동개발이 권장되지 않은 지구간 자율적 공동개발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

- 기존 골목길 등 가로체계 유지
- 공동개발 해당 토지등소유자 100% 동의
- 최대개발규모 이하 범위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변경	일반정비형 (제15·16지구)	12,854.1	획지①	9,277.1	인사동 87 일원	67	-	-	67	-	
	소단위관리형	1,110.3	H1~H9	1,110.3	종로2가 11 일원	11	11	-	-	-	
	보전정비형	791.3	I1~I3	791.3	종로2가 12 일원	3	3	-	-	-	

※ 소단위 관리형 및 보전 정비형지구는 개별 사업시행 예정으로, 현재는 존치로 분류함

(2) 건축시설 계획

가) 기정(철거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비고
	명칭	면적(㎡)						
기정	15,16지구	9,783.6	인사동 87번지 일대	판매,영업	60.0이하	760.0이하	84.6m(19층)이하	-

나) 변경

① 일반정비형(15·16지구)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공평구역 15·16지구	12,854.1	획지①	9,277.1	인사동 87번지 일대	업무시설	60이하 (저층부 70이하)	1,000 이하	70m이하 양각규제 이하	-																			
심의완화 사항	건폐율	- 옛길, 옛물길 보전 및 가로의 연속성 유지,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 저층부(5층이하, 20m이하) : 70% 적용 - 고층부(6층이상, 20m이상) : 60% 적용																											
	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600% 이하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150% 적용																											
		<table><tr><td>목표</td><td>인센티브 대상</td><td>요건(연면적 1만㎡이상)</td><td>인센티브</td><td>인센티브량</td></tr><tr><td rowspan="3">친환경 개발 (의무)</td><td>녹색건축물 인증</td><td>그린1등급(최우수)</td><td rowspan="3">기준등급 준수시 100%</td><td rowspan="3">150% 적용</td></tr><tr><td>에너지총량</td><td>240(kWh/㎡·y)</td></tr><tr><td>신재생에너지</td><td>11%이상(비주거)</td></tr><tr><td>역사보전 (의무)</td><td>옛길·물길 재현</td><td>옛길·물길 흔적 표시 (역사도심 관리지점에 적합하게 조성시)</td><td>50%</td><td></td></tr></table>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연면적 1만㎡이상)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최우수)	기준등급 준수시 100%	150% 적용	에너지총량	240(kWh/㎡·y)	신재생에너지	11%이상(비주거)	역사보전 (의무)	옛길·물길 재현	옛길·물길 흔적 표시 (역사도심 관리지점에 적합하게 조성시)	50%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연면적 1만㎡이상)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최우수)	기준등급 준수시 100%	150% 적용																							
에너지총량	240(kWh/㎡·y)																												
신재생에너지	11%이상(비주거)																												
역사보전 (의무)	옛길·물길 재현	옛길·물길 흔적 표시 (역사도심 관리지점에 적합하게 조성시)	50%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250.18%																													
<table><tr><td>공공 시설</td><td>산식 = $750\% \times 1.3 \times \alpha$ = $750\% \times 1.3 \times 0.2566$ = 250.18%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3,577.0 - 1,196.2) / 9,277.1 = 0.2566$</td></tr></table> ※ ①(600%) + ②(150%) + ③(250.18%) = 1,000.18% ∴ 1,000%이하 적용									공공 시설	산식 = $750\% \times 1.3 \times \alpha$ = $750\% \times 1.3 \times 0.2566$ = 250.18%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3,577.0 - 1,196.2) / 9,277.1 = 0.2566$																			
공공 시설	산식 = $750\% \times 1.3 \times \alpha$ = $750\% \times 1.3 \times 0.2566$ = 250.18%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3,577.0 - 1,196.2) / 9,277.1 = 0.2566$																												
건축선	피맛길 연결부 건축선 지정 완화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적용의 완화 심의를 통하여 피맛길의 형태 유지 권장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북측도로변 : 3m - 서측도로변 : 2m - 동측도로변 : 3m - 남측도로변(피맛길) : 피맛길 남측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원 3.5~4.5m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건축한계선 지정 - 저층부 벽면한계선 - 대상지 내부 옛길에 지정한 공공보행통로변으로 저층부(1층) 벽면한계선 지정 ※ 자세한 계획내용은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참조																											
공공보행통로		- 옛길 형태 유지 및 보행활성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지정(3개소) - 위치 및 폭원 : 옛길변 4m, 피맛길→북측도로 3m, 옛길→인사동길 3m - 피로티형으로 조성 가능하며, 유효높이는 3m이상으로 계획																											
공개공지		- 북측 신설도로변 및 인사동길변 - 지구내 옛길에 면하여 공개공지 조성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배제 시, 공개공지내 일부 중첩되는 공공보행통로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중복 산입 가능																											
외부개방공간		- 옥상정원 : 동측 인사동길변 옥상부분 일반이용 가능한 쉼터 제공 (외부에서 직접 연계되는 동선 계획) - 아카이빙공간 : 피맛길과 옛물길 사이 소규모 오픈스페이스 활용 조성 (장기) 피맛길변 소단위관리·보전정비지구와 연계된 입체적 통로계획 검토																											
역사보전계획		- 옛길·물길 - 건축물 내·외부 공간에 바닥포장, 패턴 등 조경 및 디자인요소를 다양하게 도입하여 옛길·물길 선형을 표시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옛길·물길의 장소임을 표시 - 피맛길 - 도로 폭원 및 형상 유지 ※ 물길의 경우 구역내 사·중점을 제외한 선형 및 폭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협의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종로, 삼일로변, 서측 12m 도로 - 통행체계 - 북측 6m 도로변 : <종로~진출입구> 양방향통행, <진출입구~삼일대로> 일방통행
공공시설 등 부담계획	공공기여율 20.4% (구역 평균 순부담률 20.2% 이상)
기타	저층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및 생활공유가로 계획을 통해 피맛길 활성화 및 개방성 될 수 있도록 할 것

※최고높이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높이기준 70m이하와 사업대상지 동측 탑골공원(사적 제354호)의 문화재 양각규제 동시 적용

※15·16지구내 공공보행통로 계획은 '도시·건축 혁신 공공기획 가이드라인' 방침 이후 '19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1개소→3개소 변경

② 소단위관리형(H1~H9) 및 보전정비형(I1~I3)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높이(m) 층수(층)	비고
	명칭	면적(㎡)						
변경	H1	59.2	종로2가 11, 11-4, 11-5	-	80이하	600이하/-	40m이하	
변경	H2	167.9	종로2가 14	-	80이하	600이하/-	40m이하	
변경	H3	133.3	종로2가 17	-	80이하	600이하/-	40m이하	
변경	H4	150.5	종로2가 20	-	80이하	600이하/-	40m이하 양각규제이하	
변경	H5	180.8	종로2가 21, 21-1, 22-3	-	80이하	600이하/-	40m이하 양각규제이하	
변경	H6	92.9	종로2가 22-2	-	80이하	600이하/-	40m이하 양각규제이하	
변경	H7	92.9	종로2가 22	-	80이하	600이하/-	40m이하 양각규제이하	
변경	H8	105.2	종로2가 23, 23-1	-	80이하	600이하/-	40m이하 양각규제이하	
변경	H9	127.6	종로2가 24, 24-1, 25	-	80이하	600이하/-	40m이하 양각규제이하	
변경	I1	423.1	종로2가 12, 12-1, 12-2, 13, 13-1, 13-2	-	80이하	600/800이하	40m이하	
변경	I2	156.6	종로2가 15, 15-1, 16, 16-1	-	80이하	600/800이하	40m이하	
변경	I3	211.6	종로2가 19	-	80이하	600/800이하	40m이하 양각규제이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서측도로변 : 2m - 동측도로변 : 3m - H9지구 가각부 : 2m - 건축지정선 - 종로변 :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2m 이격 지정 - 건축물(전층) 외벽선은 대지전면폭원의 2/3이상 접도 ※ 종로변 건축선 지정(폭원:3m) 폭원 완화 변경고시 시 적용 가능 - 피맛길 남측변 :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 1층 외벽선은 전채 대지전면폭원의 2/3이상 접도 - 저층부 벽면한계선 - 현행 통로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폭 2m)변으로 저층부(1층) 벽면한계선 지정 1층에 한하여 적용 ※ 자세한 계획내용은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참조						
공공보행통로		H3 지구 현황통로 : 2m						
역사보전계획		- I1~I3 지구: 보전 정비형지구로 지정하여 역사도심 관리지침에 의거, 근현대건축물 보전 계획 수립 ※ 향후, 전문가자문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존 가능여부 및 보존범위 결정						
기타		향후 리모델링 및 신·증축 시 공평구역 환경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건축물의 밀도 및 주용도는 사업시행 시 건축물의 건축시설계획 및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범위내에서 사업시행 계획(건축계획) 내용을 따름

※사업시행시 양각규제 현황은 종로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의 확인 필요

※개별 지구에서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상한용적률 적용 가능

※보전정비형 지구(II~I3)의 경우, 지구내 근현대건축물 보존계획 수립시, 허용용적률 부여 가능

7)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1) 불허용도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A1	15·16지구 H1~H9 I1~I3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도박게임장(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자동차관련시설(이면부에 한해 주차장 제외)

(2) 권장용도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구분	세부용도
a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상1~2층	- 저층부 상업시설 : 의류, 잡화, 서적, 음반 등 소매점이나 카페, 식당 등 상업용도 - 전시시설 등 : 갤러리, 미디어아트, 체험형 스튜디오, 기업홍보관(공공에게 개방 가능), 정보안내소 등

8)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지구명	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15·16지구 H1~H9 I1~I3	- 동측 삼일로변 - 북측 6m도로변 - 서측12m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H9지구 : 가각부 건축한계선 2m 적용)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15·16지구	피맛길 북측변	- 피맛길 남측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원 3.5~4.5m 이격하여 해당하는 부분에 건축한계선 지정 ※ 향후 피맛길내 공중연결로 설치 시, 연결브릿지에 한해서 건축한계선 적용 제외
건축지정선	H1~H9 I1~I3	종로변	-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2m 이격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전층) 외벽선은 대지전면폭원의 2/3이상 접도 ※ 종로변 건축선 지정(폭원:3m) 폭원 완화 변경고시 시 적용 가능
	H1~H9 I1~I3	피맛길 남측변	-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 1층 외벽선은 전체 대지전면폭원의 2/3이상 접도
저층부 벽면한계선	15·16지구	공공보행통로변	- 지구내 옛길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폭 4m) 양측변으로 저층부 벽면한계선 지정 1층에 한하여 적용
	H3	현황 통로 (대지내공지)	- 현황 통로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폭 2m)변으로 저층부 벽면한계선 지정 1층에 한하여 적용
건축물의 방향성	H1~H9 I1~I3	-	-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가각에 접한 대지의 벽면은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에 일치되도록 권장
건물 진출입구	15·16지구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에서의 상업시설 출입구는 가로에서 개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 - 피맛길변으로 건물 진출입구를 1개소 이상 확보
	H1~H9 I1~I3		

※피맛길변 건축선 완화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적용의 완화 심의를 통하여 건축선 지정 완화하여 피맛길의 형태 유지 권장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지구명	위치	계획내용
공개공지	15-16지구	• 지구내 옛길	• 북측 신설도로변 및 인사동길변 • 지구내 옛길에 면하여 공개공지 조성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에 따른 용적을 인센티브 배제 시, 공개공지내 일부 중첩되는 공공보행통로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중복 산입 가능
전면공지	15-16지구 H1~H9 I1~I3	• 동측 삼일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3m
		• 북측 6m 도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건축계획에 따라 차도형 및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3m
		• 서측 12m 도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2m
	H1~H9 I1~I3	• 종로변	• 건축지정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2m
공공보행통로	15-16지구	• 도면에 표기	• 옛길 형태 유지 및 보행활성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지정(3개소) - 위치 및 폭원 : 옛길변 4m, 피맛길→북측도로 3m, 옛길→인사동길 3m • 피로티형으로 조성 가능하며, 유효높이는 3m 이상으로 계획 ※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의 선형 일부 조정 가능
	H3	• 현황 통로 (대지내공지)	• 기존 현황 통로 유지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지정 - 폭원 2m • 피로티로 조성 가능하며, 피로티 조성시 유효높이는 3m 이상으로 계획

(3)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가) 규제사항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외부형태	15-16지구 H1~H9 I1~I3	• 사선절제형 건축형태 금지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주변 건물과 조화를 유지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 옥탑층 노출 금지 •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 금지	
	I1~I3	• 해당 획지에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역사문화요소별 관리지침에 따라, 획지내 근현대건축물의 외관 및 구조 일부 보존 • 향후 전문가 자문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보존규모 및 보존 범위를 구체화	
저층부 외관	15-16지구 H1~H9 I1~I3	• 주가로에 면한 1층 벽면적의 70% 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 • 1층 개구부 높이 통일 •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재료 및 색채	H1~H9 I1~I3	•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금속, 타일, 반사유리) •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 • 원색계열 재료, 도료 사용 금지	
진입구 처리	15-16지구 H1~H9 I1~I3	• 건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 접근로는 유효폭 1.8m이상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함 •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화분 등 보행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나) 권장사항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외부형태	15-16지구 H1~H9 I1~I3	- 재료 및 색채를 이용하여 저층부(1~3층이하) 분리 유도 - 입면분절 등 수직분절 요소 도입 권장(건축물 폭원 10m 초과시 건축물 정면 분절 권장) - 종로변 등에서의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다양한 입면계획 권장	
맞벽건축	H1~H9 I1~I3	가로변을 기준으로 좌우측 인접건축물과의 맞벽건축을 권장	
재료 및 색채	15-16지구 H1~H9 I1~I3	- 역사자원이 지닌 안정감 있는 분위기와 조화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의 사용을 권장 - 목재나 석재 등 천연 그대로의 재료사용 권장 - 저층부의 경우 재질감이 느껴지는 소재사용 권장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의 역사문화경관 권장색채범위 사용 권장	※서울경관기본계획 및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의 역사특성거점에 준하여 계획

9)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지정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종로, 삼일로변, 서측 12m 도로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결정도 상 위치표기
통행체계	북측 6m 도로변	- 종로~진출입구 : 양방통행 - 진출입구~삼일대로 : 일방통행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H1~H9 I1~I3	- 각 획지내 주차장 추가설치 금지 (기 조성된 주차장 제외) - 당해 건물의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10)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계획

(1)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가) 규제사항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15-16지구 H1~H9 I1~I3	- 옥상 광고물 설치 금지(탑골공원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건축물에 한함) - 수량 : 종류에 관계없이 업소당 2개 이내 - 규모 : 가로 - 업소의 전면폭 이하 세로 - 각층 층고의 60% 이내 - 표현방식 : 원색계열 사용 금지, 네온사인, 점멸등 금지, 모든 간판은 입체형으로 설치 4층 이상은 가로형 간판 설치 금지 - 그 외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의 내용을 따름	

※ 향후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을 따름

나) 권장사항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15·16지구 H1~H9 I1~I3	형태	• 간판의 글자와 간판의 베이스를 분리하는 형태인 채널(문자형) 간판 권장	
	크기	• 입체문자형일 경우 윗층과 아래층 사이 창문간 벽면 폭의 40% 이내, 최대 40cm	
	색상	• 가급적 원색과 같은 고채도의 색은 피하고 제시된 권장 색채 사용	
	조명	• 부분조명이나 간접조명을 권장하고, 간판전체 직접조명방식은 지양하며, 직접조명방식을 사용할 경우는 문자나 도형부분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원색계열의 광원사용 금지	

(2)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권장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지반보존	• 지하수 및 생태면적확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자연지반의 보존을 권장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 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벽면녹화	•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기법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생태면적률	• 건축물의 신축시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 에 의해 적용할 것을 권장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신·재생에너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	
개방화장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기준에 따라 설치	

(3)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계획

가) 규제사항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조명	15·16지구 H1~H9 I1~I3	- 직접광원의 노출 금지 - 조명기구 노출 금지 - 원색계열의 색상사용 금지 - 과도한 색상의 변화, 반복점멸 금지 - 디지털 경관조명 설치불가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 준용

나) 권장사항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내부조명	15·16지구 H1~H9 I1~I3	- 친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조명기구 사용 권장 - 폐점시간부터 24시까지 1층매장부의 디스플레이 공간부에 야간조명 권장	야간경관개선 및 특화된 가로분위기 연출을 위해 계획
건축물 외부야간조명		-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간접조명, 라이트 업, 이루미네이션 등의 조명방법을 고려하면서 차분하고 은은한 가로분위기를 연출 권장 - 일몰시간부터 24시까지 건축물 외부에 투사하는 야간경관조명 권장 -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한 조명은 지양하고 건축물 빛의 레벨이 조화를 이루도록 권장	야간경관개선 및 안전을 위하여 계획

11)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1) 주민협정 등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주민협정	H1~H9 I1~I3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의 특성 유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계획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민협정으로 정하여 별도로 운영	

(2)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역사유적 터 표시 (멸실문화재)	15·16지구	- 대지 내 역사유적터(멸실유적지)가 있는 경우 표석 설치 - 설치 위치, 형태 등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경관 계획' 을 참고하여 「서울특별시 표석설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결정함	조선극장터 (인사동 110번지)
원형 옛 길 (원형 가지길)	15·16지구	- 피맛길 - 도로폭원 및 형상 유지 - 옛 길 - 바닥포장 및 패턴 등을 통해 옛길 선형을 표시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옛길의 장소임을 표시 - 옛길 형태 보전 및 보행활성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지정	
옛 물길	15·16지구	- 건축물 내·외부 공간에 바닥포장, 패턴 등 조경 및 디자인요소를 다양하게 도입하여 옛 물길 선형을 표시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옛 물길의 장소임을 표시 ※옛 물길의 경우 15·16지구내 시·종점을 제외한 선형 및 폭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결정	
근현대건축자산	11~13	- 보전 정비형지구로 지정하여 역사도심 관리지침에 의거, 근현대건축물 보전 계획 수립 ※향후, 전문가자문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존 가능여부 및 보존범위 결정	
역사유물 보전 (매장문화재)	전체	- 정비사업 시행중 발견되는 유물이 있을 경우 대지 내부 또는 정비구역안 상시 개방되는 건축물 내에 역사유물 전시 권장 - 설치의 위치와 규모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피맛길	15·16지구	아카이빙공간 : 피맛길과 옛물길 사이 소규모 오픈스페이스 활용 조성	

(3)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대상지 주변의 고층빌딩 및 대규모 건축물과 통일된 경관이미지를 연출하고 동시에 주변지역과의 스카이라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	
환경보전	- 공사시 사업부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등으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 설치토록 유도 - 폐기물의 수거는 종로구의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토록 계획	
재난방지	사업시행시 건축물내 피난시설(피난계단, 방화구획 등)의 확보 및 화재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건축물 신축 유도	

(4) 정비사업 시행계획

가)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15·16지구	제50조의 사업시행인가	구역지정(변경) 후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	-	-	-
H1~H9 11~13	도정법 제19조의 행위허가 및 제50조의 사업시행인가	개별 지구별 개발에 따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	-	-	-

나) 시행지구별 사업시행계획

구분	사업시행 방안	비고
개별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에 따른 행위허가(건축허가) 절차 이행 - 지구내 토지등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00% 동의시 - 100% 미동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절차 이행 - 공동개발 권장지구는 공동개발지구내 토지등소유자 100% 동의시 행위허가 절차 가능 - 공동개발이 권장되지 않은 지구간 자율적 공동개발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구 도 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위허가 절차 가능 · 기존 골목길 등 가로체계 유지 · 공동개발 해당 토지등소유자 100% 동의 · 최대개발규모 이하범위 ※ 타 지구간 공동개발시 용적률, 높이 등은 지구별 계획내용을 각각 적용	
공동개발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 이행	

(5)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 해당사항 없음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 주택밀실 현황

① 건축물 동수

구역내 건축물 동수			구역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81	12	69	81	78	3

②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12	2	1	1	2	1	1	
단독주택	12	2	1	1	2	1	1	
공동주택	-	-	-	-	-	-	-	-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③ 규모별 거주현황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 계		2	2	2	-	-	-	-	-	-	-
60㎡ 이하	소계	2	2	2	-	-	-	-	-	-	-
	30㎡이하	1	1	1	-	-	-	-	-	-	-
	30㎡초과 ~ 50㎡이하	1	1	1	-	-	-	-	-	-	-
	50㎡초과 ~ 60㎡이하	-	-	-	-	-	-	-	-	-	-
	60㎡초과 ~ 85㎡이하	-	-	-	-	-	-	-	-	-	-
85㎡ 초과	소계	-	-	-	-	-	-	-	-	-	-
	85㎡초과 ~ 135㎡이하	-	-	-	-	-	-	-	-	-	-
	135㎡초과	-	-	-	-	-	-	-	-	-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 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지구명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규	15-16지구	12,854.1	인사동 87번지 일대	9,277.1	-
신규	H1	59.2	종로2가 11, 11-4, 11-5	59.2	-
신규	H2	167.9	종로2가 14	167.9	
신규	H3	133.3	종로2가 17	133.3	
신규	H4	150.5	종로2가 20	150.5	
신규	H5	180.8	종로2가 21, 21-1, 22-3	180.8	
신규	H6	92.9	종로2가 22-2	92.9	
신규	H7	92.9	종로2가 22	92.9	
신규	H8	105.2	종로2가 23, 23-1	105.2	
신규	H9	127.6	종로2가 24, 24-1, 25	127.6	
신규	I1	423.1	종로2가 12, 12-1, 12-2, 13, 13-1, 13-2	423.1	
신규	I2	156.6	종로2가 15, 15-1, 16, 16-1	156.6	
신규	I3	211.6	종로2가 19	211.6	

(12)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사항

- 2019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결과: 조건부가결) '조건사항' 이행할 것

1. 피맛길, 옛길, 옛물길 등 보전계획 관련
 - 1-1. 소단위관리지구 및 보전정비지구의 피맛길 환경정비(공중선 등 정비)는 공평 제15·16지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할 것.
 - 1-2. 피맛길 상부는 추후 사업추진과정에서 금회 상정안과 같은 열린 공간 확보 뿐 아니라 이용자 편의성 확보(캐노피 설치 필요성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향후 마련될 피맛길 전체 구간의 가이드라인과 정합되도록 조정할 것.
 - 1-3. '옛물길' 보전계획은 구거임을 고려한 과도하거나 인위적인 보전 지양 측면과 상위·관련계획을 고려한 적극적인 보전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할 것.
- ※ 향후 도시재생실에서 '피맛길 전체 구간'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시 공평 제1·2·4지구에 준하는 보전계획을 수립할 것.
3. 금회 상정안의 저층부 보행통로 추가 계획 관련 정비계획상 담보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로 결정 검토할 것.
4. 도로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관련
 - 4-1. 향후 교통영향평가 시 종로, 삼일대로에 접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및 적정 보행동선계획 측면에서 교통처리계획을 면밀 검토할 것.
 - 4-2. 피맛길 폭원을 고려하여 소단위관리지구 및 보전정비지구의 향후 리모델링, 신축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선 등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5. 건축계획 관련 저층부 소규모 매스·입면계획 등은 공공대안으로 제시한 금회 상정안을 유지하되, 고층부 매스·재질계획 등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적정성을 면밀 검토할 것.
6.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관련
 - 6-1. 도시건축 혁신 공공대안의 주요 내용(저층부 외부개방공간 등)이 향후 완공 후에도 담보될 수 있도록 종로구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6-2. 향후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문에 금회 상정안의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제시할 것.

- 정비계획 지침 변경 필요시 (가칭)도시건축혁신단(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관계부서 협의, 공공건축가 자문, 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4) 변경사유

- 공평구역은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 및 건설부고시 제533호(1979.12.28.)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28호(2005.10.27.)로 변경·지정된 공평구역 제15·16지구에 대하여, 도심고유의 특성 및 장소성, 옛 도시조직을 유지, 보존하면서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체 철거형 정비방식을 일반정비형, 소단위관리형 및 보전정비형으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혼합형 정비계획을 수립·결정함

1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경미한 사항 (구청장 권한사항)	• 당해 정비계획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경미한 사항(구청장 권한사항)으로 정한다. - 최대개발규모내 개별 시행지구간 자율적 공동개발(단,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 정비기반시설 확보 등 부담계획 확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 그 외, 경미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④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규정에 의한다.	

2. 도시·건축 혁신 공공기획 가이드라인

가. 도시·건축 혁신 정비계획 세부지침

공공보행통로	• 옛 길 : 폭원 4m 이상 • 피맛길에서 북측도로와 연계되는 남북 통로 : 폭원 3m 이상 • 인사동길에서 옛길과 연계되는 동서 통로 : 폭원 3m 이상 • 종로변에서 피맛길과 연계되는 남북 통로 : 폭원 2m 이상 (H3지구) ※저층부 개방성·연계성 측면에서 공공보행통로 외 주요 생활공유가로 계획
건축선	• 북측 : 건축한계선 3m, 서측 : 건축한계선 2m, 동측 : 건축한계선 3m • 남측(피맛길) : 건축한계선 ⇒ 피맛길 남측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원 3.5 ~ 4.5m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건축한계선 지정 (※ 향후 피맛길 내 공중연결로 설치 시, 연결브릿지에 한해서 건축한계선 적용 제외) • 공공보행통로변 : 공공보행통로변(옛길변)으로 저층부 벽면한계선 지정(1층에 한함)
교통처리계획	• 북측차량출입불허구간 : 종로 3-211, 종로 및 삼일대로변 전구간, 소로3-(1) 동측 일부구간 • 진출입구 위치 : 소로 3-(1)번 계획 • 통행체계 : (종로~진출입구) 양방통행, (진출입구~삼일대로) 일방통행
공개공지	• 북측 신설도로 및 인사동길변 계획
외부개방공간	• 옥상정원 : 동측 인사동길변 옥상부분 일반이용 가능한 쉼터 제공 (외부에서 직접 연계되는 동선 계획) • 아카이빙공간 : 피맛길과 옛물길 사이 소규모 오픈스페이스 활용 조성 • (장기) 피맛길변 소단위관리·보전정비지구와 연계된 입체적 통로계획 검토
비 고	★ '도시·건축 혁신 정비계획 지침(이하 '정비계획지침')' 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 이후 확정된 정비계획지침은 사업 완료시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비계획지침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칭)도시건축혁신단(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관계부서 협의, 공공건축가 자문, 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도시·건축 혁신 건축계획지침

도시측면 : 도심 고유의 특성 유지, 기존 도시 조직 고려한 장소성 강화
① 대상지 일대 옛 도시평면, 가로 선형, 필지 규모 등을 배려한 공간구조 계획 ② 주변지역 기능(대단위 업무·상업/소단위 문화·상업/역사문화자원 등)을 고려한 외부공간 계획
역사보전 : 형식적 보전이 아닌 실제 이용으로 연계되는 역사성 강화
③ 고층화를 감안한 피맛길 폭원 일부 확폭 ※ 단, 기존 길이 인지되도록 표현 ④ 옛길변 근생용도 배치, 옛물길 중 외부공간은 일부구간 물길 발굴복원 계획으로 활성화 유도 ('복원' 과 '흔적 남기기' 를 유연하게 적용) ⑤ 승동교회, YMCA, 근현대 건축자산을 배려하는 계획 수립
공 공 성 : 개방된 저층부, 다양한 외부공간 계획
⑥ 저층부 보행동선은 구역 내·외부의 연계성 및 개방성 확보 ⑦ 입체적 골목길, 썬크광장, 인사동길변 옥상정원 등 다양한 소규모 외부공간 계획 ⑧ 서울시민의 삶이 축적된 장소임을 고려한 아카이빙 공간계획 ※ 역사문화자원 종합 고려 ⑨ 지구 유형별(일반정비/소단위관리/보전정비)·단계별 구체적인 환경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특화설계 : 도시조직·역사성을 배려하는 차별화된 건축계획
⑩ 피맛길변 종전 정비사업과 차별성을 갖는 저층부 소규모 매스/입면계획 등 특화설계 ⑪ 종로, 인사동길 등에서의 가로경관, 위압감을 줄 일 수 있는 고층부 매스계획 ⑫ 역사도심의 장소성을 고취할 수 있는 입면패턴, 재질 계획
★ '도시·건축 혁신 건축계획 지침(이하 '건축계획지침')' 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 이후 확정된 건축계획지침은 사업 완료시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건축계획지침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칭)도시건축혁신단(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관계부서 협의, 공공건축가 자문, 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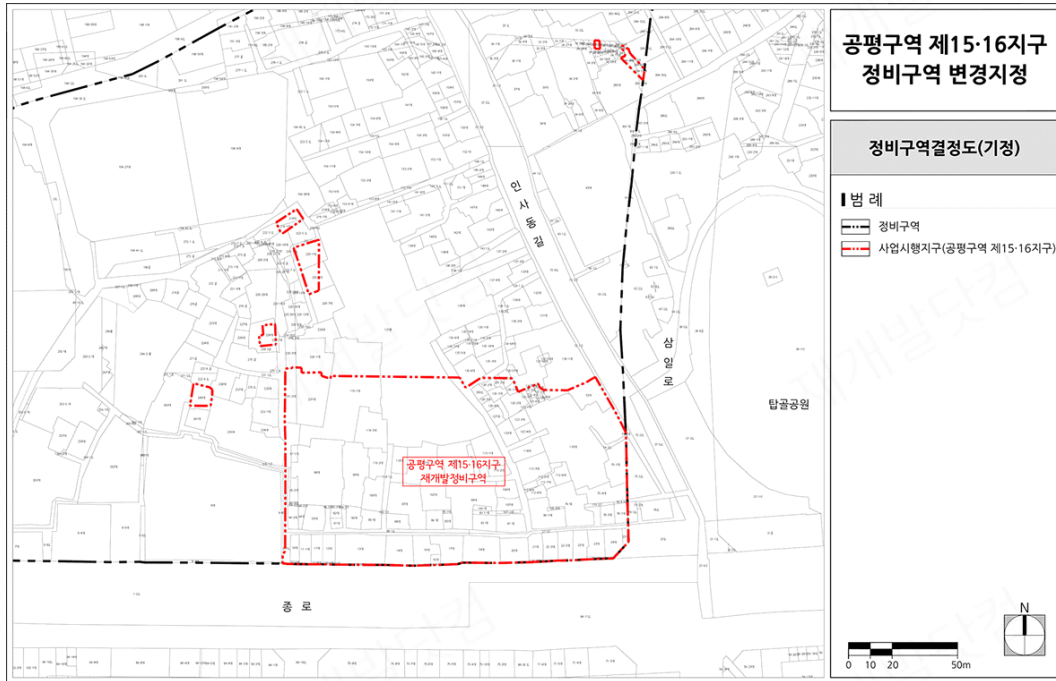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02-2133-4638) 및 종로구 도시개발과(☎ 02-2148-2672)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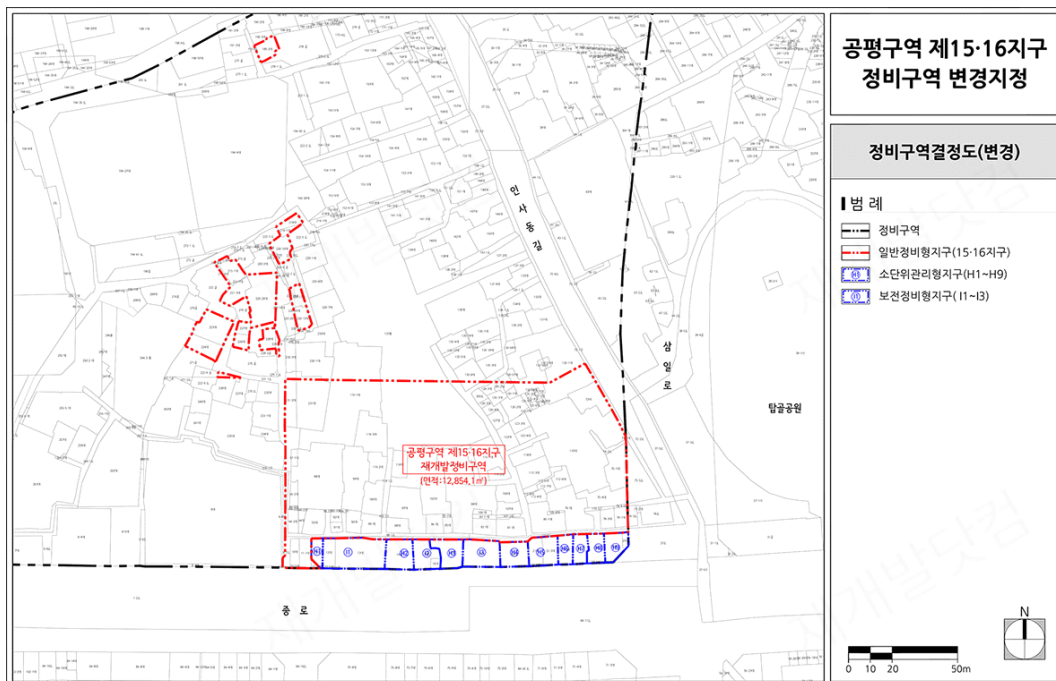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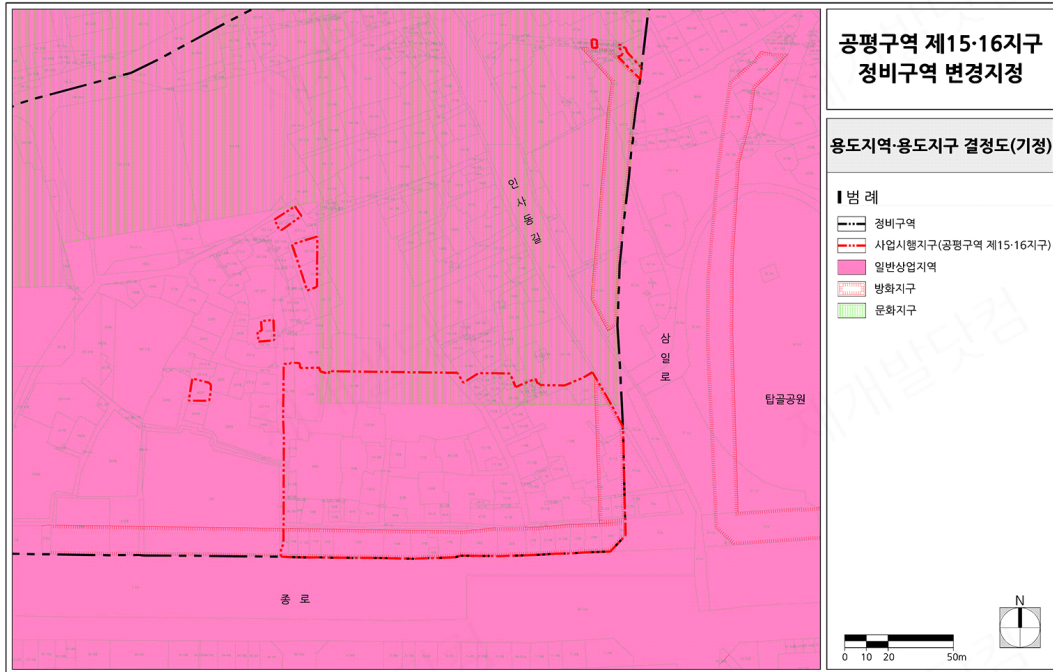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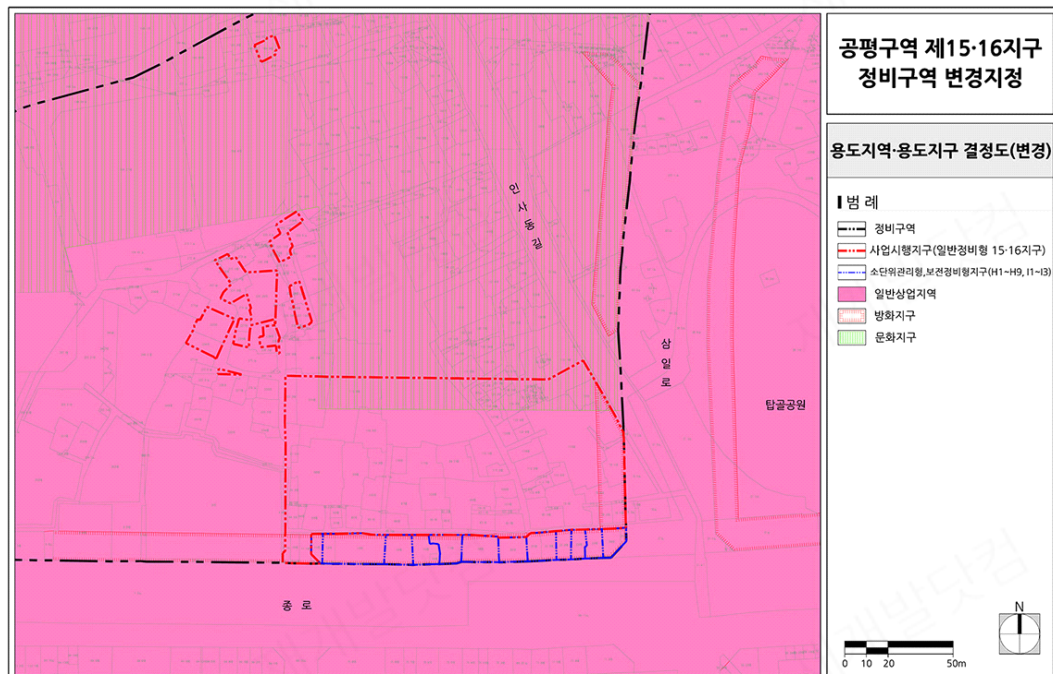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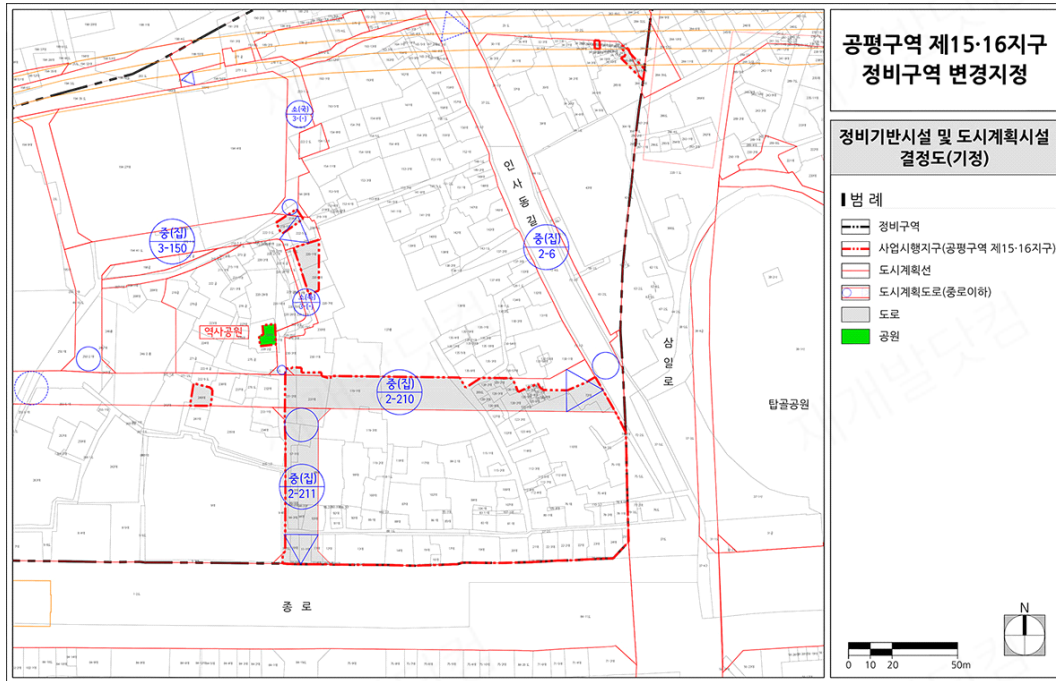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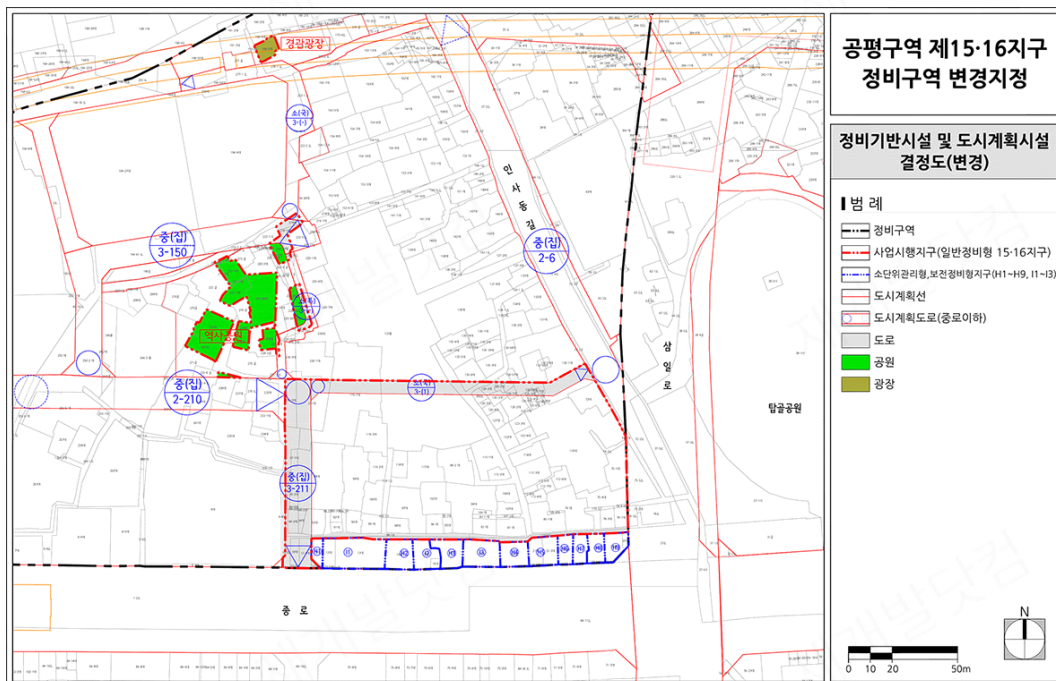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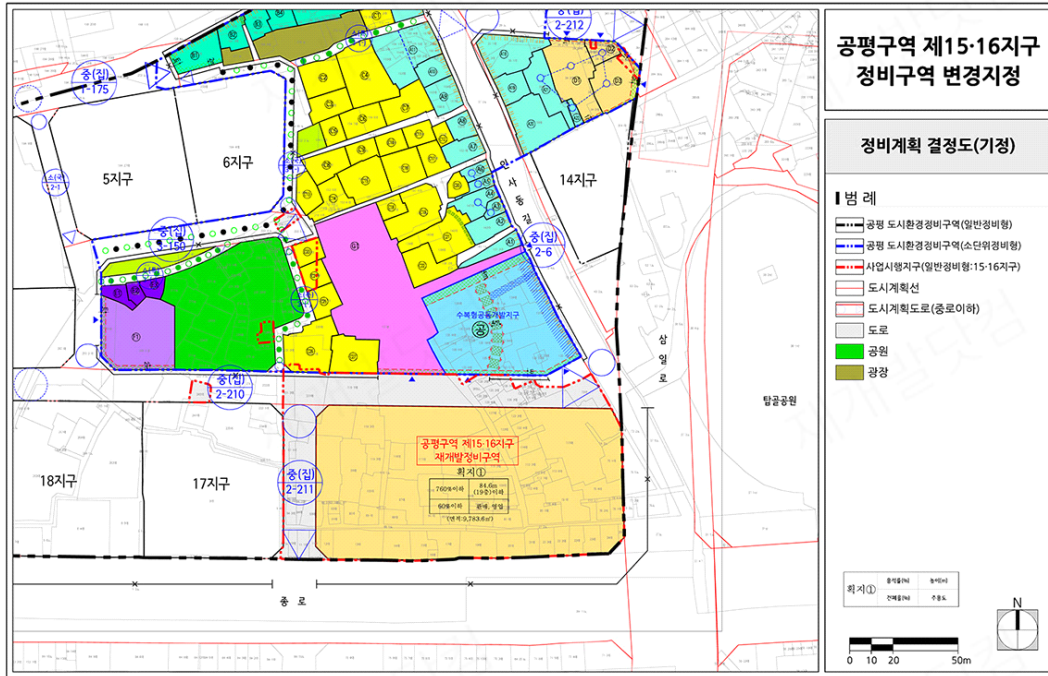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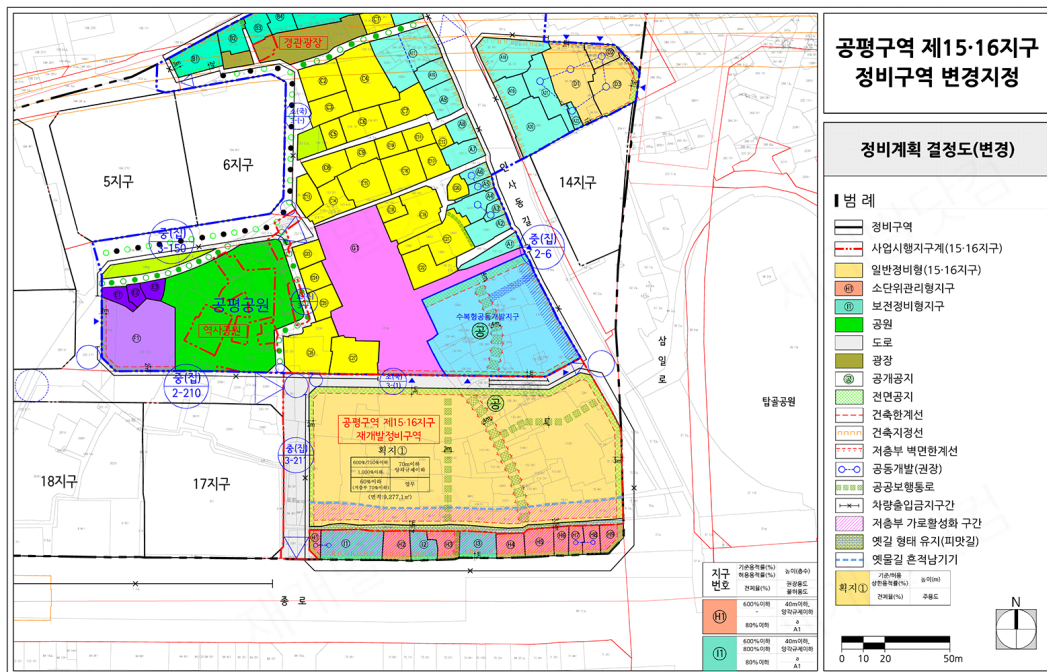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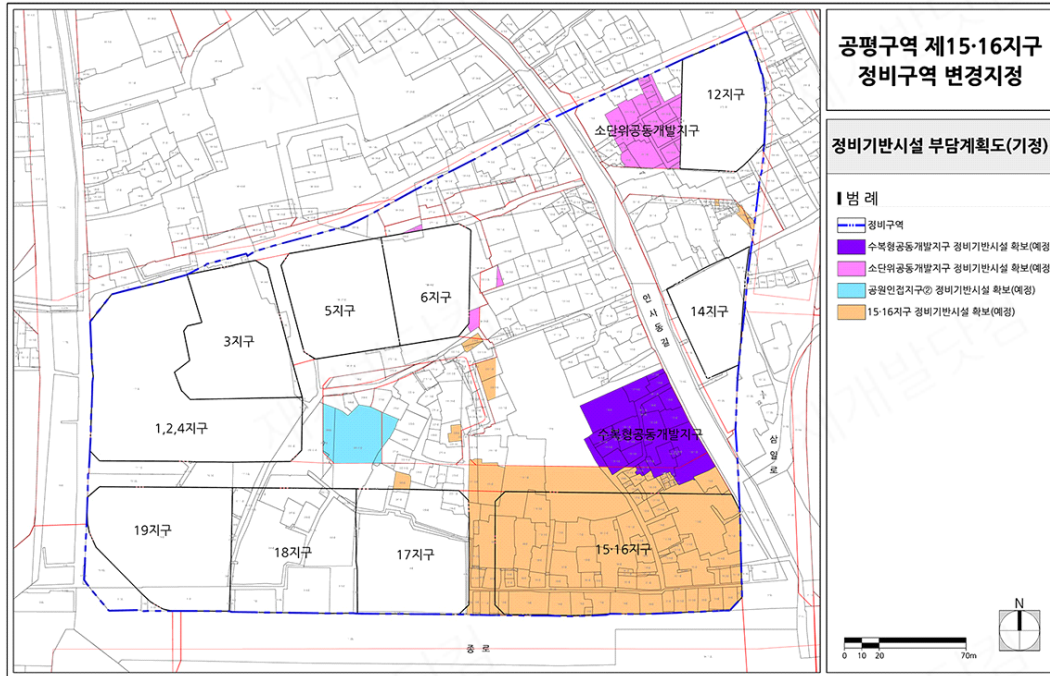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도(기정)



□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도(변경)

